

KR선물 표준투자권유준칙

소관팀 - Compliance

개정 : 2014. 11. 03

개정 : 2015. 02. 10

개정 : 2016. 02. 01

개정 : 2016. 05. 24

개정 : 2016. 06. 30

개정 : 2016. 10. 11

개정 : 2017. 06. 01

I. 총 칙

1. 목적

이 투자권유준칙(이하 “준칙”이라 한다)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제1항에 따라 회사의 임직원과 투자권유대행인(이하 “임직원등”이라 한다)이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구체적인 절차 및 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이 준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다만, 이 준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법, 법시행령, 법시행규칙, 금융위원회의 금융투자업규정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규정 등(이하 “관계법령등”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1) “투자권유”란 특정 투자자를 상대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또는 투자자문계약·투자일임계약·신탁계약(관리형신탁계약 및 투자성 없는 신탁계약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체결을 권유하는 것을 말한다. ☞법 제9조제4항
- 2) “포트폴리오투자”란 투자위험 분산을 목적으로 둘 이상의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 3) “파생상품등”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을 말한다. ☞법 제46조의 2제1항
 - 가. 파생상품
 - 나. 법시행령 제52조의2제1항 각 호의 금융투자상품

※ 참고사항

- ▶ “파생상품등”이란 법 제46조의2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을 지칭

- ① 파생상품 : 장내파생상품 및 장외파생상품
 - ② 파생결합증권 (단, 금적립 계좌등은 제외)
(법시행령 제52조의2제1항제1호)
 - ③ 파생상품 집합투자증권 : 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단, 「금융투자업규정 제4-7조의2 본문에 따른 인덱스펀드는 제외되나, 레버리지·인버스 ETF는 파생상품등에 해당)
 - ④ 집합투자재산의 50%를 초과하여 ②의 파생결합증권에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 ⑤ 법 제165조의11제1항에 따른 조건부자본증권
 - ⑥ ①~⑤까지의 금융투자상품에 운용하는 금전신탁계약의 수익증권(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신탁의 수익권이 표시된 것도 포함)
- ☞ 가. 집합투자재산의 50% 이하로 ②의 파생결합증권(단서 제외)에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및
나. ②의 단서에 따른 파생결합증권에만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은 “파생상품등”의 범위에서 제외

3. 투자권유 및 판매 일반 원칙

임직원등은 투자자에 대하여 투자권유 및 판매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임직원등은 관계법령등을 준수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법 제37조제1항
- 2) 임직원등은 투자자가 합리적인 투자판단과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투자에 따르는 위험 및 거래의 특성과 주요내용을 명확히 설명하여야 한다.
- 3) 임직원등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스스로 투자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여야 하고, 그에 대한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투자자에게 알려야 한다.
- 4) 임직원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자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가 이익을 얻거나 회사 또는 제삼자가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 제37조제2항

II. 투자자 구분 등

4. 방문 목적 확인

- 1) 임직원등은 투자자 방문시 투자자의 방문 목적 및 투자권유 희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2) 임직원등은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투자자에 대하여는 투자권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투자자가 원하는 객관적인 정보만을 제공하여야 한다.

※ 참고사항

- ▶ 법상 투자권유란 특정 투자자를 상대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또는 투자자문계약·투자일임계약·신탁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는 것을 말하므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또는 계

약체결의 권유가 수반되지 않은 정보제공 등은 투자권유로 보기 어려움
 ▶ 투자권유가 수반되지 않은 정보제공의 경우에는 투자자정보 확인서를 작성할 필요 없음

5. 일반·전문투자자의 구분

- 1) 임직원등은 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해당 투자자가 일반투자자인지 전문투자자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법 제46조제1항
- 2) 임직원등은 법 제9조제5항 단서에 따라 일반투자자로 전환할 수 있는 전문투자자가 일반 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동의하여야 한다. ☞법 제9조제5항 단서
- 3) 주권상장법인이 회사와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일반 투자자로 본다. 단, 해당 법인이 전문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회사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에는 전문투자자로 본다.
 ☞법 제9조제5항제4호단서

Ⅲ.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투자자에 대한 판매

6. 투자권유를 받지 않는 투자자에 대한 보호의무

- 1) 임직원등은 투자자가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아 투자자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투자권유를 할 수 없음을 알려야 한다. 만일, 파생상품등의 거래를 희망하는 투자자가 투자자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거래가 제한된다는 사실을 [참조: 별지 제1호] 알려야 한다.

※참고사항

- ▶ 투자자가 투자권유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 [별지 1]의 “투자권유 불원 (또는 투자자정보 미제공) 확인” 내용이 포함된 확인서를 징구하고 후속 판매절차를 진행함
- ▶ 일임계약의 경우 “투자권유 불원(또는 투자자정보 미제공)확인서” 징구 후에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맞춤형 계약의 특성에 부합하지 아니하며, 금융투자업규정 제4-77제5호 및 제4-93조제 26호 위반 소지 <22. 투자일임업자 및 신탁업자에 대한 특칙 참조>
 ☞ (참고) 금융투자업규정 §4-77제5호 : 투자자의 연령·투자목적·소득수준 등을 반영하여 투자자를 유형화하고 각 유형에 적합한 방식으로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지 않는 행위 금지

투자권유 불원 (또는 투자자정보 미제공) 확인

<input type="checkbox"/>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투자자정보를 제공하지 않음 ※ 일임·(비지정형)신탁계약 및 파생상품등 거래희망시에는 체크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거나 투자자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객의 별도 의사가 있기 전까지 회사가 투자권유를 할 수 없습니다. ▪ 투자시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 손익에 대한 책임은 모두 고객에게 귀속됩니다. 	

- 2) 임직원등은 투자자가 투자권유를 받지 않고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라도 원금손실 가능성, 투자에 따른 손익은 모두 투자자에게 귀속된다는 사실 등 투자에 수반되는 주요 유의사항을 알려야 한다.
 - 3) 임직원등은 투자자에 대한 투자권유 여부와 상관없이 투자자가 법 제120조제1항에 따라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에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판매 전에 해당 투자설명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단, 법시행령 제132조에 따라 투자설명서의 교부면제되는 투자자는 제외한다. ☞법 제124조제1항
 - 4) 3)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투자자가 투자설명서 교부를 별도로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간이투자설명서 교부로 갈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투자자에게 투자설명서를 별도로 요청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 법 제124조제3항 및 제4항
 - 5) 투자자가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투자자문 결과에 따른 금융투자상품등의 구매를 다음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요청하는 경우 해당 금융투자상품등을 판매하는 금융투자회사는 적합성원칙 및 설명의무와 설명서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
- 가. 투자자가 투자자문업자로부터 적합성원칙, 설명의무 이행 및 설명서를 교부 받았음을 확인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 나. 투자자문계약과 결합된 금융투자회사의 판매계좌(자문결합계좌)를 통해 투자자문 결과에 따른 금융투자상품등의 구매의사가 전달되는 경우<2017.06.01신설>

7. 파생상품등에 대한 특칙 (적정성원칙)

- 1) 임직원은 투자자에게 파생상품등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투자권유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그 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이하 “투자자정보”라 한다)를 파악하여야 한다.
☞법 제46조의2제1항
- 2) 임직원은 1)에 따라 파악한 투자자정보에 비추어 해당 파생상품 등이 그 투자자에게 적정하지 아니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파생상품 등의 내용, 해당 투자에 따르는 위험 및 해당 투자가 투자자정보에 비추어 적정하지 아니하다는 사실을 투자자에게 알리고 투자자로부터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기명날인, 녹취, 전자우편, 전자우편과 유사한 전자통신, 우편 또는 전화자동응답시스템(이하 “서명등”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확인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적정성 판단의 기준은 10.의 적합성판단을 위한 기준에 따른다.
☞법 제46조의2제2항, 법시행령 제52조의2제2항 및 제3항

※ 참고사항

- ▶ 임직원등은 투자자가 스스로 걱정하지 않은 파생상품등에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1호의 “부적합(부적정) 금융투자상품 거래내용 확인” 양식을 통해 투자자에게 걱정하지 않다는 사실을 인식시켜야 함

IV. 투자권유 희망 투자자에 대한 판매

IV-1. 투자자정보

8. 투자자정보 파악 및 투자자성향 분석 등

- 1) 임직원등은 투자권유를 희망하는 투자자에 대하여 투자권유 전에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투자자의 투자자정보를 [별지 제1호]의 투자자정보 확인서에 따라 파악하고, 투자자로부터 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법 제46조제2항

※참고사항

- ▶ [별지1호] 투자자정보 확인서와 같이 일반적 투자자성향과 현재 투자자금성향을 구분하지 않는 경우에도 “현재 투자자금성향”과 관련된 문항(예: 투자자금의 목적, 투자예정기간, 손실감내도 등)은 포함할 필요가 있으며 기존에 파악된 정보의 변경여부에 대해서는 매번 투자권유 때마다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함
- ▶ 투자자정보 확인서 작성 방법 : 투자자정보는 반드시 투자자가 자필로 작성할 필요는 없음. 직원이 면담과정에서 파악한 정보를 컴퓨터 단말기에 입력하고 이를 출력하여 투자자에게 확인받는 방법도 가능함

- 2) 임직원등은 1)에 따라 확인한 투자자정보의 내용 및 [별지제2호]에 따라 분류된 투자자의 성향(이하 “투자자성향”이라 한다)을 투자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 법 제46조제2항
- 3) 임직원등은 원칙적으로 투자자 본인으로부터 투자자정보를 파악하여야 하며, 투자자의 대리인이 그 자신과 투자자의 실명확인증표 및 위임장 등 대리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지참하는 경우 대리인으로부터 투자자 본인의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위임의 범위에 투자자정보 작성 권한이 포함되어 있는 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참고사항

- ▶ 회사가 사용하는 위임장 양식에 “투자자정보 작성 권한 위임 여부”를 기재
 - 본 준칙에서 규정하는 ‘대리인’은 ‘임의대리인’의 경우를 상정하고 있으며, 법정대리인의 경우 관련법령 또는 법원의 명령 등 법정대리권의 발생근거에 따라 대리권의 확인방법이 달라질 수 있음(예 :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의 법정대리인으로서 회사에서 투자권유를 받는 경우에는 임의대리인의 경우와 같이 본인인 자녀로부터 수권행위가 있을 수 없으므로, 이

경우 자녀에 대한 친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 법정대리권이 있음이 확인되면 별도로 자녀에 대한 투자자정보 작성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없음)

- 4) 임직원등은 투자권유를 희망하는 투자자라 하더라도 투자자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투자자성향을 파악할 수 없으므로 투자권유를 할 수 없음을 알리고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투자자로 간주하고 “Ⅲ.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투자자에 대한 판매” 절차에 따른다.

9. 투자자정보의 유효기간

- 1) 임직원등은 투자자로부터 별도의 변경 요청이 없으면 투자자정보를 파악한 날로부터 36개월(투자자정보 유효기간) 동안 투자자정보가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 2) 임직원등은 투자자에게 1)을 설명하고 투자자정보 및 투자자의 이메일 전화번호등이 변경되면 회사에 변경내용을 통지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 3) 임직원등은 회사가 이미 투자자정보를 알고 있는 투자자에 대하여 투자권유를 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자정보 유효기간 경과 여부를 확인하고,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투자자정보를 다시 파악하여야 한다.

※ 참고사항
▶ 유효기간의 만기가 지난 경우 유효기간 만기일 이후 최초 투자권유 시점에 투자자정보를 새롭게 파악하도록 함

- 4) 1)부터 3)에도 불구하고 투자일임계약이 체결된 투자자의 경우에는 매 분기 1회이상 투자자의 재무상태 및 투자목적 등의 변경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금융투자업규정 제4-77조제6호, 제4-93조제22호

IV-2. 투자권유

10. 투자권유 절차

- 1) 임직원등은 회사가 정한 [별지 제4호]의 적합성판단 기준에 비추어 보아 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투자권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법 제46조제3항

※ 참고사항
▶ 회사는 투자자의 투자자성향을 특정 유형별로 분류한 경우, 회사가 정한 투자자성향분류와 금융투자상품 위험도 평가 분류[별지 제3호]를 참조하여 투자권유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별지 제4호]로 정하여야 함.
▶ 회사는 투자자의 투자자성향을 특정 유형별로 분류하지 않는 경우에도 투자권유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하여야 함.

- 2) 임직원등은 회사가 이미 투자자정보를 알고 있는 투자자에 대하여는 기존 투자자성향과 그 의미에 대해 설명하고 투자권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참고사항

- ▶ 이 경우 투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별지4호의 “고객의 투자성향별 투자권유 가능상품 분류기준” 표를 활용하는 것도 가능함

- 3) 임직원등은 투자자가 보유 자산에 대한 위험회피 목적으로 투자하거나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등 해당 투자를 통하여 투자에 수반되는 위험을 낮추거나 회피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상품 위험도 분류 기준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투자권유할 수 있다.
- 4) 만일, 회사가 이미 알고 있는 투자자성향에 비해 위험한 금융투자상품에 투자자가 스스로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투자자성향과 금융투자상품의 위험수준을 확인시켜주고 해당 투자가 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 참고사항

▶ 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

- 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않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리고 판매를 하거나

-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거래를 중단할 수 있음

- ▶ 회사는 “투자자성향별 적합한 금융투자상품” 표를 활용하여 투자자가 본인의 투자자성향 대비 고위험 상품에 대한 투자임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부적합(부적정) 금융투자상품 거래내용 확인

투자자 성향	()
금융투자상품의 위험 등급	()

☞ 괄호안 부분은 자필기재(하단 표를 참조하여 해당하는 명칭 기재)

※ 투자자성향별 적합한 금융투자상품

투자자성향	공격형		...		안정형
금융투자상품의 위험 등급	초고위험 이하 상품		...		초저위험

☞ 명칭 등 분류기준은 회사별 기준으로 수정하여 사용 가능

- 투자자성향 대비 위험도가 높은 금융투자상품은 회사가 투자권유를 할 수 없으므로 **본인 판단하에 투자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투자시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 손익에 대한 책임은 모두 고객에게 귀속**됩니다.
- 특히, 투자자의 성향에 비해 고위험 상품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예상보다 큰 폭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임직원은 투자자가 “부적정 금융투자상품 거래내용 확인”을 기재하는 경우에도 관련법령에 따라 해당 파생상품등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및 해당 거래가 투자자에게 적정하지 아니하다는 사실을 반드시 고지하여야 함

11. 고령투자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판매시 보호기준

— 임직원등은 고령투자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10. 1)에 따른 [별지4호]의 적합성판단 기준과 [별지5호]의 강화된 고령투자자 보호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2.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특칙

1) 임직원은 장외파생상품의 매매 및 그 중개·주선 또는 대리의 상대방이 일반투자자인 경우에는 투자권유 여부와 상관없이 그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하려는 자산·부채 또는 계약 등(이하 “위험회피대상”이라 한다)에 대하여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손실을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줄이기 위한 거래를 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거래를 할 수 있다.

가. 위험회피대상을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할 예정일 것

나.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약정거래기간 중 해당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익이 위험회피대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익의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2) 이 경우 임직원은 투자자가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통하여 회피하려는 위험의 종류와 금액을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 법 제166조의2제1항제1호, 법시행령 제186조의2

13. 투자권유시 유의사항

1) 임직원등은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법 제49조, 법시행령 제54조, 제55조, 제68조제5항제3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8조

가. 거짓의 내용을 알리는 행위

나.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

다. 투자자로부터 투자권유의 요청을 받지 아니하고 방문·전화 등 실시간 대화의 방법을 이용하는 행위. 다만, 증권과 장내파생상품에 대하여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투자권유를 받은 투자자가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자권유를 계속하는 행위. 다만, 다음의 각 행위는 제외한다.

(1) 투자권유를 받은 투자자가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한 후 1개월이 지난 후에 다시 투자권유를 하는 행위

(2) 다른 종류의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투자권유를 하는 행위. 이 경우 다음의 각 금융투자상품 및 계약의 종류별로 서로 다른 종류의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가) 금융투자상품 :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 장내파생상품, 장외파생상품

(나)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

① 증권에 대한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

② 장내파생상품에 대한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

③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

(다) 신탁계약

① 법 제103조제1항제1호의 신탁재산에 대한 신탁계약

② 법 제103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신탁재산에 대한 신탁계약

- 마. 투자자(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신용공여를 받아 투자를 한 경험이 있는 일반투자자는 제외한다)로부터 금전의 대여나 그 중개·주선 또는 대리를 요청받지 아니하고 이를 조건으로 투자권유를 하는 행위
- 바. 관계법령등 및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금전·물품·편익 등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 2) 임직원등은 투자자의 투자자성향 및 금융투자상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장기투자가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투자자에게 해당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장기투자를 권유할 수 있다.
- 3) 임직원등은 투자자의 투자자산이 특정 종목의 금융투자상품에만 편중되지 아니 하도록 분산하여 투자할 것을 권유할 수 있다.

※ 참고사항

- ▶ 임직원등이 투자자에게 **포트폴리오투자를 권유하는 경우에는** 그 임직원등이 금융투자협회에 등록된 금융투자전문인력(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으로서의 업무범위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만을 권유할 수 있음
- ▶ 임직원등이 투자자문계약을 체결한 투자자에게 모든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투자자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협회에 3종의 투자상당사(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로서 **모두 등록되어 있어야 함**
 - 금융투자상품 중 일부에 대하여만 투자자문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을 자문할 수 있는 투자자문인력으로서 금융투자협회에 등록되어 있으면 됨 (예: 펀드에 대해서만 자문시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 등록만 필요)
 - 투자자문계약을 체결하고 투자자문업자로서 자문하는 경우 ① 투자자의 보유자산 전체가 아닌, 해당 투자시점에서 포트폴리오에 투자하는 구체적인 금액만을 기준으로 적합성 판단을 하고, ② 투자자문계약을 체결한 이후 매도·추가매수 또는 자산가치 변동 등으로 포트폴리오 가중평균위험이 변동되면 포트폴리오 자산 구성 비율을 재조정하도록 안내 또는 확인하는 절차를 두는 것이 바람직함

- 4) 임직원등은 일반투자자에게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에 따른 “계열회사 또는 계열회사에 준하는 회사”(이하 “계열회사등”이라 한다)인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펀드를 투자권유하는 경우 다음의 사항을 모두 준수하여야 한다.
- 가. 그 집합투자업자가 회사와 계열회사등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
- 나. 계열회사등이 아닌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유사한 펀드를 함께 투자권유하여야 한다.

※ 참고사항

- ▶ “유사한 펀드”란 아래 기준에 따른 펀드를 말함
 - ①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한 계열회사등의 펀드와 금융투자상품 위험도 분류기준에 따른 위험 수준이 같거나 낮을 것
 - ②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한 계열회사등의 펀드와 같은 종류(법 제229조에 따른 종

류를 말한다)의 펀드일 것. 다만, 증권집합투자기구 및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이외의 종류일 경우 회사가 같은 종류의 펀드를 갖추지 못했을 때에는 다른 종류로 할 수 있음

* ① 및 ②의 조건을 충족하는 펀드 중에서 회사는 주된 투자대상자산·투자지역(국내·해외) 등을 고려하여 투자권유하여야 함. 다만, 해당 펀드의 향후 전망, 운용 안정성, 판매전략 등을 감안하여 달리 투자권유할 수 있음

IV-3. 설명의무

14. 설명의무

- 1) 임직원등은 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성에 관한 구조와 성격,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조건이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사항,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한 사항 등(이하 “투자설명사항”이라 한다)을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설명한 내용을 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아야 한다. ☞법 제47조, 법시행령 제53조
- 2) 임직원등은 1)에 따라 설명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복잡성 및 위험도 등 상품측면과 투자자의 투자경험 및 인식능력 등 투자자측면을 고려하여 설명의 정도를 달리할 수 있다.

※ 참고사항

- ▶ 법(제47조)에서는 투자자가 투자설명사항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이해하였음을 확인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모든 투자자에 대하여 동일한 수준으로 기계적으로 설명할 필요는 없음. 즉, 설명의 정도는 금융투자상품의 성격 및 투자자의 지식·경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따라서, 신규 상품, 구조가 복잡한 상품이나 위험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또는 금융지식이 부족한 투자자나 취약투자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경우보다 설명이 좀 더 필요할 수 있으며,
 - 동일 또는 유사 상품에 대한 투자 경험이 있거나 해당 상품에 대한 지식수준이 높은 투자자 등에게는 보다 간단한 설명이 가능할 것임. 유사 상품에 대한 투자 경험 또는 지식수준에 대한 획일적인 기준을 제시하기는 어려우므로 임직원은 동일한 유형의 상품에 대한 투자자의 투자경험 및 해당 상품에 대한 간략한 질문 등을 통해 투자자의 이해수준을 객관적으로 파악해볼 필요가 있음
 - 예를 들어, 해당 회사에 동일한 유형의 상품에 투자한 기록이 남아있거나 투자자가 다른 회사에서 동일한 유형의 상품에 투자한 경험 등을 이유로 간략한 설명 등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해당 상품의 구조와 위험성에 대한 간단한 질문을 통해 파악된 투자자의 이해수준에 맞게 설명의 정도를 간략히 할 수 있을 것임
- ▶ 계속적 거래가 발생하는 단순한 구조의 상장증권(예: 주식, ETF 등) 및 장내파생상품(예: 선물옵션) 등을 거래소시장에서 거래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매 투자권유시마다 거래의 방법 및 위험성 등을 설명하기 곤란하므로, 최초 계좌개설 또는 투자권유시에만 설명의무를 이행하는 것도 가능할 것임

3) 임직원등은 1) 및 2)에 따라 설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가 주요 손익구조 및 손실위험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투자권유를 계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임직원등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에 따른 설명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투자자에게 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가. 투자자가 서면, 전화·전신·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설명서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나.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의 경우 법 제123조에 따른 투자설명서(집합투자증권의 경우 투자자가 투자설명서 교부를 별도로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말한다)를 판매 전에 교부하는 경우

☞법 제124조,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제1항제9호나목

※ 참고사항

▶ 설명내용을 투자자가 이해하였다는 사실은 다음의 양식 등을 활용하여 확인받을 수 있음

상품가입신청서상 설명내용 고객 확인란(예시)

1. 설명서를 교부 받았음(설명서 수령을 거부한 경우는 미교부)
2. 상품의 내용, 핵심 투자위험(신용위험, 시장위험, 환위험 등), 원금손실 가능성 (예금자 보호법 적용대상 아님*), 수수료, 조기상환조건, 계약의 해제·해지, 취약 금융소비자 우선설명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

* 음영 부분은 고객 자필기재

금융투자상품이 아닌 현금예수금(위탁자예수금·수익자예수금), 신용공여담보금 등 일부 담보금, 비과세종합저축 등 저축자예수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자보호 대상임

[※ 회사별 취급상품이 상이한 경우 일부 수정가능]

▶ 설명서 내용 중 원금손실가능성, 예금자보호, 투자위험 등과 관련된 중요단어는 상대적으로 크고 굵은 문자로 표기하여야 함

(예 : A4용지 기준, 다른 글자보다 2pt 이상)

5) 임직원등은 1)에 따른 설명을 함에 있어서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을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누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 제47조제3항

6) 임직원등은 투자자가 추후에도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문의할 수 있도록 자신의 성명, 직책, 연락처 및 콜센터 또는 상담센터 등의 이용방법을 알려야 한다.

※ 참고사항

▶ 고객에게 교부하는 설명서 등 각종서류를 활용하여 판매직원의 성명 및 연락처 등 사후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함

V.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도 분류

15.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도 분류

1) 회사는 다음의 요소들을 감안하여 각 금융투자상품별 위험도를 [별지 제3호]와 같이 분류하며,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위험도 분류는 다른 금융투자상품과 별도로 기준을 정한다.

가. 정량적 요소 : 과거 가격의 변동성, 원금손실가능범위, 기초자산의 종류 및 구성 비중, 신용등급, 만기, 레버리지 정도 및 금융투자상품의 목표 투자기간 등

나. 정성적 요소 : 상품구조의 복잡성, 거래상대방위험, 조기상환가능성 및 유동성 등

2) 회사는 1)에 따라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도를 분류하는 경우 장내파생상품은 다른 금융투자상품(장외파생상품을 제외한다)보다 높은 위험도로 분류한다.

※ 참고사항

▶ 회사는 투자자가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당해회사의 금융투자상품 위험도 분류표를 상담창구에 비치하고, 투자권유시 이를 활용하여 다른 금융투자상품과의 비교 등의 방법을 통해 상대적인 위험수준을 설명하여야 함
금융투자상품 위험도 분류표는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도에 따라 3가지 색상(적색, 황색, 녹색)으로 구분하여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도에 대한 투자자의 직관적인 이해도를 높여야 함

3) 회사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위험도 분류를 하는 경우 외부기관이 작성한 위험도 평가 기준 등을 고려할 수 있다.

4) 임직원등은 포트폴리오투자의 경우, 이를 구성하는 개별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도를 투자금액 비중으로 가중 평균한 포트폴리오 위험도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포트폴리오의 구성, 운용전략 및 위험도 책정 등을 회사의 전문조직에서 결정하는 경우 이에 따르도록 한다.

VI. 그 밖의 투자권유 유의사항

16. 계약서류의 교부 및 계약의 해제

1) 임직원은 투자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서류를 투자자에게 지체 없이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내용 등을 고려하여 투자자보호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서류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매매거래계좌를 설정하는 등 금융투자상품을 거래하기 위한 기본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내용에 따라 계속적·반복적으로 거래를 하는 경우

나. 투자자가 계약서류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

다. 투자자가 우편이나 전자우편으로 계약서류를 받을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로서 투자자의 의사에 따라 우편이나 전자우편으로 계약서류를 제공하는 경우

2) 임직원은 투자자문계약을 체결한 투자자에게 1)에 따른 계약서류를 교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투자자문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 법 제59조제1항, 제2항, 법시행령 제61조

17. 손실보전 등의 금지

임직원등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 제103조제3항(신노후생활연금신탁, 연금신탁, 퇴직일시금신탁)에 따라 손실의 보전 또는 이익의 보장을 하는 경우, 그 밖에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 가. 투자자가 입을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여 줄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 나. 투자자가 입을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후에 보전하여 주는 행위
- 다.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보장할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 라.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사후에 제공하는 행위

☞법 제55조

18.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의 금지행위

1) 과당매매의 권유 금지

임직원등은 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일반투자자에게 빈번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 또는 과도한 규모의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를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특정거래가 빈번한 거래인지 또는 과도한 거래인지 여부는 다음의 사항을 감안하여 판단한다.

- 가.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의 총액
- 나. 투자자의 재산상태 및 투자목적에 적합한지 여부
- 다. 투자자의 투자지식이나 경험에 비추어 해당 거래에 수반되는 위험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여부
- 라. 개별 매매거래시 권유내용의 타당성 여부

☞법 제71조, 법시행령 제68조제5항제2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제1항제5호가목

2) 자기매매를 위한 권유 금지

임직원은 투자자를 거래상대방으로 하여 매매하는 경우 외에 금융투자상품시장에서 회사 또는 자기계산에 따라 금융투자상품 매매를 유리하게 또는 원활하게 할 목적으로 투자자에게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제1항제5호나목

3) 부당한 권유 금지

- 가. 임직원은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미리 알고 있으면서 이를 투자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매수나 매도를 권유하여 해당 금융투자상품을 매도하거나 매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시행령 제68조제5항제5호
- 나. 임직원은 투자자에게 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매매를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시행령 제68조제5항제9호
- 다. 임직원은 법 제55조(손실보전 등의 금지) 및 법 제71조(불건전영업행위의 금지)에 따른 금지 또는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외파생상품거래, 신탁계약 또는 연계거래 등을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시행령 제68조제5항제11호
- 라. 임직원은 신뢰할 만한 정보·이론 또는 논리적인 분석·추론 및 예측 등 적절하고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고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나 특정한 매매전략·기법 또는 특정한 자산운용배분의 전략·기법을 채택하도록 투자자에게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제1항제5호다목
- 마. 임직원은 해당 영업에서 발생하는 통상적인 이해가 아닌 다른 특별한 사유(회사의 인수계약 체결, 지급보증의 제공, 대출채권의 보유, 계열회사 관계 또는 회사가 수행중인 기업인수 및 합병 업무대상,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 보유 등)로 그 금융투자상품의 가격이나 매매와 중대한 이해관계를 갖게 되는 경우에 그 내용을 사전에 투자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를 알리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 (1) 투자자가 매매권유당시에 해당 이해관계를 알고 있었거나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경우. 다만, 조사분석자료에 따른 매매권유의 경우는 제외한다.
- (2) 매매를 권유한 임직원이 그 이해관계를 알지 못한 경우. 다만, 회사가 그 이해관계를 알리지 아니하고 임직원으로 하여금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권유하도록 지시하거나 유도한 경우는 제외한다.
- (3) 해당 매매권유가 투자자에 대한 최선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다만, 조사분석자료에 따른 매매권유의 경우는 제외한다.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제1항제5호바목

- 바. 임직원은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권유하는 대가로 권유대상 금융투자상품의 발행인 및 그의 특수관계인등 권유대상 금융투자상품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재산적 이익을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제1항제5호아목
- 사. 임직원은 신용공여를 통한 매매거래를 원하지 않는 투자자에게 이를 부추기거나 조장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신용공여를 통한 매매거래를 원하는 투자자에게는 그에 따르는 위험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 아. 임직원은 매매거래에 관한 경험부족 등으로 임직원등의 투자권유에 크게 의존하는 투자자에게 신용공여를 통한 매매거래나 과다하거나 투기적인 거래, 선물·옵션 등 위험성이 높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를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19. 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에 대한 특칙

- 1) 임직원등은 투자자와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자료를 미리 투자자에게 제공하고 확인받아야 한다.
 - 가. 투자자문의 범위 및 제공방법 또는 투자일임의 범위 및 투자대상 금융투자상품등
 - 나.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의 수행에 관하여 회사가 정하고 있는 일반적인 기준 및 절차
 - 다.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실제로 수행하는 임직원의 성명 및 주요경력
 - 라. 투자자와의 이해상충방지를 위하여 회사가 정한 기준 및 절차
 - 마.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과 관련하여 투자결과가 투자자에게 귀속된다는 사실 및 투자자가 부담하는 책임에 관한 사항
 - 바. 수수료에 관한 사항
 - 사. 투자실적의 평가 및 투자결과를 투자자에게 통보하는 방법(투자일임계약의 경우에 한한다)
 - 사의2. 투자자는 투자일임재산의 운용방법을 변경하거나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는 사실
 - 아. 임원 및 대주주에 관한 사항
 - 자. 투자일임계약인 경우에는 투자자가 계약개시 시점에서 소유할 투자일임재산의 형태와 계약종료 시점에서 소유하게 되는 투자일임재산의 형태
 - 차.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할 때 적용되는 투자방법에 관한 사항
 - 카. 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투자일임보고서의 작성대상 기간
 - 타. 그 밖에 금융투자업규정 제4-73조 각 호의 사항
- 2) 임직원등은 투자자와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투자자에게 교부하는 계약서류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재내용은 1)에 따라 교부한 서면자료에 기재된 내용과 달라서는 아니 된다.

- 가. 1)의 각 호의 사항
 - 나. 계약당사자에 관한 사항
 - 다. 계약기간 및 계약일자
 - 라. 계약변경 및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 마. 투자일임재산이 예탁된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그 밖의 금융기관의 명칭 및 영업소 명
- ☞ 법 제97조, 법시행령 제98

20. 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의 준수사항

1) 임직원등은 투자자와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자료를 미리 투자자에게 제공하고 확인받아야 한다.

- 가. 투자자문의 범위 및 제공방법 또는 투자일임의 범위 및 투자대상 금융투자상품등
- 나.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의 수행에 관하여 회사가 정하고 있는 일반적인 기준 및 절차
- 다.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실제로 수행하는 임직원의 성명 및 주요경력([로보어드바이저의 경우, 투자자문 또는 투자일임이 로보어드바이저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사실](#))

※ 회사참고사항 20-1
▶ “로보어드바이저”란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한 알고리즘 및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투자자의 성향에 맞는 투자자문·운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자산관리서비스를 의미

- 라. 투자자와의 이해상충방지를 위하여 회사가 정한 기준 및 절차
 - 마.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과 관련하여 투자결과가 투자자에게 귀속된다는 사실 및 투자자가 부담하는 책임에 관한 사항
 - 바. 수수료에 관한 사항
 - 사. 투자실적의 평가 및 투자결과를 투자자에게 통보하는 방법(투자일임계약의 경우에 한한다)
 - 사의2. 투자자는 투자일임재산의 운용방법을 변경하거나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는 사실
 - 아. 임원 및 대주주에 관한 사항
 - 자. 투자일임계약인 경우에는 투자자가 계약개시 시점에서 소유할 투자일임재산의 형태와 계약 종료 시점에서 소유하게 되는 투자일임재산의 형태
 - 차.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할 때 적용되는 투자방법에 관한 사항
 - 카. 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투자일임보고서의 작성대상 기간
 - 타. 그 밖에 금융투자업규정 제4-73조 각 호의 사항
- 2) 임직원등은 투자자와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투자자에게 교부하는 계약서류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재 내용은 1)에 따라 교부한 서면자료에 기재된 내용과 달라서는 아니 된다.
- 가. 1)의 각 호의 사항
 - 나. 계약당사자에 관한 사항
 - 다. 계약기간 및 계약일자
 - 라. 계약변경 및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마. 투자일임재산이 예탁된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그 밖의 금융기관의 명칭 및 영업소 명

☞법 제97조, 법시행령 제98조

21. 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의 금지행위

임직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1) 및 2)의 경우에는 회사가 다른 금융투자업, 그 밖의 금융업을 경영하는 경우로서 그 경영과 관련된 해당 법령에서 1) 및 2)의 행위를 금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 1) 투자자로부터 금전, 증권 그 밖의 재산의 보관·예탁을 받는 행위
- 2) 투자자에게 금전, 증권 그 밖의 재산을 대여하거나 투자자에 대한 제3자의 금전, 증권 그 밖의 대여를 중개·주선 또는 대리하는 행위
- 3) 계약으로 정한 수수료 외의 대가를 추가로 받는 행위

☞법 제98조제1항, 법시행령 제99조제1항

22. 투자일임 및 금전신탁에 대한 특칙

투자일임 및 금전신탁(투자자가 운용대상을 특정종목과 비중 등 구체적으로 지정하는 특정금전 신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 아래 사항을 추가 또는 우선하여 적용한다.

- 1) 임직원등은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투자경험, 투자연령, 투자 위험 감수능력, 소득수준 및 금융자산의 비중 등의 정보를 [별지 제1호]의 투자자정보 확인서에 준하는 일임계약권유문서 내에 포함된 “투자자정보확인서”로 조사하여 투자자를 유형화하고 투자자로부터 서명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일임의 경우 전문투자자가 투자자를 유형화하기 위한 조사를 원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조사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문투자자가 자기의 투자자유형을 선택할 수 있다. ☞법 제46조제2항, 금융투자업규정 제4-77조제5호 및 제4-93조제26호
- 2) 임직원등은 1)에 따라 확인한 투자자정보의 내용 및 분류된 투자자의 유형(이하 “투자자유형”이라 한다)을 투자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법 제46조제2항
- 3) 회사는 하나 이상의 자산배분유형군을 마련하여야 하며, 하나의 자산배분유형군은 둘 이상의 세부자산배분유형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23. 로보어드바이저에 대한 특칙

1) 투자자에게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하는 투자자문·일임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에는 로보어드바이저의 의미와 해당 로보어드바이저의 투자전략 및 위험요인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투자자의 이해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회사참고사항 23-1

- | |
|---|
| <p>▶ 설명의무의 이행은 “14. 설명의무”에서 정한 양식 등을 활용하여 설명서 교부 및 설명내용을 이해하였다는 사실을 확인</p> <p>▶ 로보어드바이저 명칭을 사용하는 금융투자상품 등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하는 상품이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하지 않는 상품 보다 더 나은 수익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설명할 필요</p> |
|---|

2) 투자자가 온라인으로 로보어드바이저 자문계약 등을 체결하는 경우 금융투자회사는 로보어드바이저의 주요 특성 및 유의사항 등을 투자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 회사참고사항 23-2

▶ 로보어드바이저에 대한 일반적인 유의사항은 [참고기]의 예시를 참조하여 설명

3) 로보어드바이저 알고리즘의 중대한 변경 등 주요사항 변경시에는 투자자에게 미리 고지하여야 한다.<신설 2017.06.01>

※참고사항

- ▶ 회사는 투자일임·금전신탁관련 투자자정보 확인서를 [별지 제1호]의 형식으로 마련하여야 하며, 일반 금융투자상품 투자권유를 위한 투자자정보확인서와 투자일임·금전신탁관련 투자자정보확인서의 질문이 다를 경우 각각 별도의 투자자정보확인서를 사용하여야 함
- ▶ 투자자유형을 점수화 방식으로 판단하고자 할 경우 투자자정보의 항목별 배점기준 및 배점결과에 따른 투자자 유형 분류 기준을 회사 자체적으로 마련해야 함 (상담보고서 방식을 택할 경우 질문은 서술형도 가능)
- ▶ 법인의 경우 투자목적, 재산상황, 투자경험(이상 법제46조제2항), 투자자의 연령, 투자위험 감수능력, 투자목적, 소득수준, 금융자산의 비중(이상 금융투자업규정 제4-77조제5호 및 제4-93조제26호)에 상응하는 질문을 회사가 법인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 단, 전문투자자의 경우 투자자의 운용계획, 투자예정기간 등을 우선 고려하여 투자자유형 분류 가능
- ▶ 해당 질문 및 투자자유형 분류의 적합성을 정기적으로 점검
(투자자가 특정 유형에 편중되어 분포되거나 고위험 투자자가 지나치게 많은 것으로 나타난 경우, 질문 및 배점기준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 필요)
- ▶ 회사가 투자자 유형별 분류는 아래의 예시를 참고(단, 5단계 이상으로 구분하여야 함)

(예시)

공격투자형	위험선호형	1단계	고위험 ↑ ↓ 저위험	1단계	공격투자형
적극투자형	적극형	2단계		2단계	주식선호형
위험·수익중립형	성장형	3단계		3단계	주식편드선호형
		4단계		4단계	고수익채권형
안정추구형	안정성장형	4단계		5단계	혼합투자형
안정형	위험회피형	5단계	6단계	안정투자선호형	
			7단계	이자소득형	

- ▶ 일반투자자에 대하여는 질문 중 투자예정기간을 별도로 고려하여 일정기간[예: 1년 이상] 투자예정인 경우에 한하여 주식 및 이와 유사한 위험등급 이상의 상품운용에 적합한 것으로 판

단하는 것이 바람직

< 투자예정기간을 감안한 투자자 유형 분류 (예시:5단계인 경우) >

구 분		위험 감내도 (투자기간 등)				
		단기	단중기	중기	중장기	장기
투자자 유형 ↑ (고위험) ↓ (저위험)	위험수익중립형	공격 투자형	공격 투자형	공격 투자형	공격 투자형	공격 투자형
	위험수익중립형	적극 투자형	적극 투자형	공격 투자형	공격 투자형	공격 투자형
	안정 추구형	위험수익중립형	적극 투자형	적극 투자형	적극 투자형	적극 투자형
	안정 추구형	안정 추구형	위험수익중립형	위험수익중립형	위험수익중립형	위험수익중립형
	안정형	안정 추구형	안정 추구형	위험수익중립형	위험수익중립형	위험수익중립형

* 투자기간은 위 예시의 5단계 외에 3단계(단기, 중기, 장기) 등으로 달리 정할 수 있으나, 투자자유형은 반드시 5단계 이상이 되어야 함.

※ 참고사항

- ▶ 자산배분유형군은 “동일자산간(예:주식)” 또는 “이종자산간(예:주식-채권)”으로 구성할 수 있음
- ▶ 주식으로만 구성된 자산배분유형군도 가능하지만, 둘 이상의 세부자산배분유형이 있어야 하며,

세부자산배분유형간 변동성이나 종목의 특성, 분산투자 효과 등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어야 함

- ▶ 다만, 투자자의 자산을 개별적으로 1:1로만 운영하는 경우(특정증권 등의 취득과 처분을 각 계좌재산의 일정 비율로 정한 후 여러 계좌의 주문을 집합하지 않는 경우)는 자산배분유형군이나 세부자산배분유형을 마련하지 않아도 됨. 다만, 이 경우에도 분류된 투자자 유형에 적합하게 운용해야 함. (참고:금융투자업규정 제4-77조제4호 및 제5호, 제4-93조제21호 및 제26호)

4) 회사는 1)에 따라 분류된 투자자 유형에 적합한 세부자산배분유형을 정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참고사항

- ▶ 분류된 투자자 유형에 부적합한 세부자산배분유형으로의 계약체결은 금융투자업규정 위반 소지가 있음에 유의 (부적합 확인서 불가)
 - ☞ (참고) 금융투자업규정 제4-77조제5호 및 제4-93조제26호 : 투자자의 연령·투자목적·소득수준 등을 반영하여 투자자를 유형화하고 각 유형에 적합한 방식으로 투자일임 또는 신탁재산을 운용하지 않는 행위 금지
- ▶ 점수화방식을 선택할 경우 배점은 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하여 해당 투자자유형별로 해당되는 세부자산배분유형을 권유
- ▶ **소극적 맞춤형요건*과 적극적 맞춤형 요건**이 상충하는 경우**
 - * 투자자가 원하는 특정 요건 반영
 - ** 투자자의 개별성을 고려하여 유형화하고 그에 적합하게 운용
 - 소극적 맞춤형 요건을 반영하되, **적극적 맞춤형 요건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까지로 한정***

투자자 유형 자산배분 유형	고위험선호 ↔ 저위험선호		
	유형군1 (주식)	주식 1 주식 2	주식 3 주식 4
유형군2 (채권)	투기등급회사채, 주식관련사채(BW 등)	↔	초우량 회사채, 국채
유형군3 (펀드)	주식형펀드, 파생상품형 펀드, 변동성이 큰 펀드	↔	국공채형 펀드, 변동성이 작은 펀드, MMF
유형군4 (이종자산)	주식, 파생상품, 투기등급회사채, 주식관련사채, 주식워런트, 원금비보존형ELS (DLS), ELW, 이머징국가채권, 외화 주식	↔	국채, MMF, 원금보존형 ELS

* 투자자가 특정 종목·섹터 등을 지정하여 편입·운용토록 요청하더라도 분류된 투자자 유형 위험도를 초과해서는 안 됨

- 다만, 전문투자자에 대해서는 소극적 맞춤형 요건을 우선 반영하여 자기의 투자 유형을 직접 선택토록 하거나(투자일임), 유형을 초과하는 운용지시도 가능(금전신탁)

< 투자자유형과 세부자산배분유형 (예시) >

* 회사채는 채권의 위험도(ex. 보증유무, 신용등급, 후순위채권 여부 등)에 따라 회사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세부자산배분유형 분류

주식		채권		펀드	기타
국내	해외	국내	해외		
-가치주 -성장주 -섹터주 -대형주 -코스닥주	-선진국 -이머징마켓 -섹터 및 특정 지역 관련 주	-국공채 -회사채 -하이일드채 -후순위채 -주식관련사채	-국공채 -회사채 -하이일드채 -후순위채	-주식형 -혼합형 -채권형 -MMF -재간접펀드 -해외(선진/이머징)	-구조화 상품 (원금보장/비보장) -대체투자 등 (금 원자재 리츠 등)

* 주식의 경우 세부자산배분유형간 분류를 종목이나 발행기업 자본금 규모 등으로 더 세분화할 수 있고, 채권의 경우도 신용등급 등을 기준으로 더 세분화할 수도 있으며, 펀드의 경우 변동성 등을 기준으로 더 세분화할 수도 있음

5) 임직원등은 투자일임·금전신탁계약 체결전에 투자자에게 다음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가. 세부자산배분유형간 구분 기준, 차이점 및 예상 위험수준에 관한 사항

나. 분산투자규정이 없을 수 있어 수익률의 변동성이 집합투자기구 등에 비해 더 커질 수 있다는 사실

다. 1)에 따라 분류된 투자자 유형 위험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투자일임·금전신탁재산의 운용에 대해 투자자가 개입할 수 있다는 사실

라. 성과보수를 수취하는 경우 성과보수 수취요건 및 성과보수로 인해 발생 가능한 잠재 위험에 관한 사항

부 칙

3. 14. 설명의무 중 예금자보호법 관련 사항은 2017. 1.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준칙은 2017. 06. 01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투자자정보확인서

본 확인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객의 투자자정보를 파악하여, 그에 적합한 투자권유를 해드리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고객의 상황에 부합하거나 가장 가까운 항목을 정확히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확인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6조의2제①항에 따라 고객이 파생상품등을 거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재산상황	월소득 대비 투자가능 자산의 비중 <input type="checkbox"/> 10% 이하 <input type="checkbox"/> 20% 이하 <input type="checkbox"/> 30% 이하 <input type="checkbox"/> 30% 초과
	여유자금 보유여부 <input type="checkbox"/> 1개월분 미만 <input type="checkbox"/> 1개월분~6개월분 <input type="checkbox"/> 6개월분~12개월분 <input type="checkbox"/> 12개월분~24개월분 <input type="checkbox"/> 24개월분 초과
	월소득 현황 <input type="checkbox"/> 100만원 이하 <input type="checkbox"/> 500만원 이하 <input type="checkbox"/> 1,000만원 이하 <input type="checkbox"/> 2,000만원 이하 <input type="checkbox"/> 2,000만원 초과
	향후 자신의 경제상황에 대한 예상 <input type="checkbox"/> 아주 좋아질 것임 <input type="checkbox"/> 좋아질 것임 <input type="checkbox"/> 지금과 비슷할 것임 <input type="checkbox"/> 나빠질 것임 <input type="checkbox"/> 매우 나빠질 것임
	향후 자신의 수입원에 대한 예상 <input type="checkbox"/> 현재 일정한 수입이 발생하고 있으며, 향후 현재 수준을 유지하거나 증가할 것으로 예상 <input type="checkbox"/> 현재 일정한 수입이 발생하고 있으나, 향후 감소하거나 불안정할 것으로 예상 <input type="checkbox"/> 현재 일정한 수입이 없으며, 연금이 주 수입원임
	총 자산규모(순자산) <input type="checkbox"/> 1억 이하 <input type="checkbox"/> 5억 이하 <input type="checkbox"/> 10억 이하 <input type="checkbox"/> 20억 이하 <input type="checkbox"/> 20억 초과
	총 금융자산대비 총 투자상품의 비중 <input type="checkbox"/> 10%이하 <input type="checkbox"/> 20%이하 <input type="checkbox"/> 30%이하 <input type="checkbox"/> 40%이하 <input type="checkbox"/> 40%초과
투자경험	투자경험이 있는 금융투자상품 (복수선택가능) <input type="checkbox"/> 국채, 지방채, 보증채, MMF 등 <input type="checkbox"/> 금융채, 신용도가 높은 회사채, 채권형펀드, 원금보장형 ELS 등 <input type="checkbox"/> 신용도 중간 등급의 회사채, 원금의 일부만 보장되는 ELS, 혼합형 펀드 등 <input type="checkbox"/> 신용도가 낮은 회사채, 주식,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ELS, 시장수익률 수준의 수익을 추구하는 주식형펀드 등 <input type="checkbox"/> ELW, 선물옵션, 시장수익률 이상의 수익을 추구하는 주식형펀드, 파생상품펀드, 주식 신용거래 등
	금융투자상품 투자경험기간 <input type="checkbox"/> 전혀 없음 <input type="checkbox"/> 1년 미만 <input type="checkbox"/> 2년 미만 <input type="checkbox"/> 3년 미만 <input type="checkbox"/> 3년 이상
	파생상품, 원금비보장형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상품펀드에 투자한 경험 <input type="checkbox"/> 투자기간 (년 월)
투자목적	<input type="checkbox"/> 적극적 매매를 통한 수익을 원하며 원금을 초과하는 손실위험도 감내 가능 <input type="checkbox"/> 적극적 매매를 통한 수익 실현 목적 <input type="checkbox"/> 시장(예:주가지수) 가격 변동 추이와 비슷한 수준의 수익 실현 <input type="checkbox"/> 채권이자·주식배당 정도의 수익 실현 목적 <input type="checkbox"/> 기존 보유자산에 대한 위험 해지 목적 ※ 기대수익이 높을수록 손실위험도 커짐
	투자수익·위험에 대한 태도 <input type="checkbox"/> 투자 수익을 고려하나 원금 보존이 더 중요 <input type="checkbox"/> 원금 보존을 고려하나 투자 수익이 더 중요 <input type="checkbox"/> 손실 위험이 있더라도 투자 수익이 중요
	투자수익·위험에 대한 태도 <input type="checkbox"/> ±0% 범위 이하 <input type="checkbox"/> ±10% 범위 이하 <input type="checkbox"/> ±20% 범위 이하 <input type="checkbox"/> ±30% 범위 이하 <input type="checkbox"/> ±30% 범위 초과
금융지식 수준/이해도	<input type="checkbox"/>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해 본 경험이 없음 <input type="checkbox"/> 널리 알려진 금융투자상품 (주식, 채권 및 펀드 등)의 구조 및 위험을 일정 부분 이해하고 있음 <input type="checkbox"/> 널리 알려진 금융투자상품 (주식, 채권 및 펀드 등)의 구조 및 위험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있음 <input type="checkbox"/> 파생상품을 포함한 대부분의 금융투자상품의 구조 및 위험을 이해하고 있음

감내할 수 있는 손실 수준	<input type="checkbox"/> 무슨 일이 있어도 투자 원금은 보전되어야 함 <input type="checkbox"/> 투자원금에서 최소한의 손실만을 감수할 수 있음 <input type="checkbox"/> 투자원금 중 일부의 손실을 감수할 수 있음 <input type="checkbox"/> 기대수익이 높다면 위험이 높아도 상관하지 않음
	손실감내 수준 <input type="checkbox"/> 원금기준 ±10% 범위 이하 <input type="checkbox"/> 원금기준 ±20% 범위 이하 <input type="checkbox"/> 원금기준 ±30% 범위 이하 <input type="checkbox"/> 원금기준 ±30% 범위 초과
투자하는 자금의 투자 예정기간	<input type="checkbox"/> 6개월 미만 <input type="checkbox"/> 6개월 이상 ~ 1년 미만 <input type="checkbox"/> 1년 이상 ~ 2년 미만 <input type="checkbox"/> 2년 이상 ~ 3년 미만 <input type="checkbox"/> 3년 이상
가족관계	<input type="checkbox"/> 부양가족 있음 <input type="checkbox"/> 부양가족 없음
과세형태	<input type="checkbox"/> 종합과세대상 <input type="checkbox"/> 일반과세대상
연령	<input type="checkbox"/> 19세 이하 <input type="checkbox"/> 20세~40세 <input type="checkbox"/> 41세~50세 <input type="checkbox"/> 51세~60세 <input type="checkbox"/> 61세 이상
취약투자자 여부	취약투자자 해당 여부 Yes <input type="checkbox"/> No <input type="checkbox"/> - 고령투자자(70세이상) - 미성년자 - 정상적 판단에 장애가 있는 투자자 - 금융투자상품 무경험자 - 문맹자 등

투자자정보 확인

본인은 귀사에 제공한 투자자정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합니다.

1. 귀사에 제공한 투자자정보는 본인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정확히 알려드린 것입니다.
2. 향후 36개월 동안에는 본인의 별도의 변경요청이 없는 경우 귀사가 본인의 투자자정보를 변경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점을 설명받았습니다.
3. 본인의 투자자정보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귀사에 통지하여야 귀사가 본인에게 적합한 투자권유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받았습니다.

· 일자 : · 고객의 성명 : 서명/인
 (대리인 거래시 대리인 성명 : 서명/인)

투자권유 불원 (또는 투자자정보 미제공) 확인

<input type="checkbox"/>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투자자정보를 제공하지 않음 ※ 일임 및 파생상품등 거래희망시에는 체크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거나 투자자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객의 별도의사가 있기 전까지 회사가 투자권유를 할 수 없습니다. ■ 투자시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 손익에 대한 책임은 모두 고객에게 귀속됩니다. 	

부적정 파생상품등 거래 확인

투자자 성향	()
금융투자상품의 위험 등급	()

☞ 괄호안 부분은 자필기재(하단 표를 참조하여 해당하는 명칭 기재)

※ 투자자성향별 적합한 금융투자상품

투자자 성향	공격투자형	적극투자형	위험중립형	안전추구형	안정형
금융투자상품의 위험 등급	초고위험상품 이하	고위험상품 이하	중위험상품 이하	저위험상품 이하	저위험 이하상품

*당사의 취급상품은 모두 초고위험상품임

- 투자자성향 대비 위험도가 높은 금융투자상품은 회사가 투자권유를 할 수 없으므로 본인 판단하에 투자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투자시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 손익에 대한 책임은 모두 고객에게 귀속됩니다.
- 특히, 투자자의 성향에 비해 고위험 상품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예상보다 큰 폭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임직원은 투자자가 “부적정 금융투자상품 거래내용 확인”을 기재하는 경우에도 관련법령에 따라 해당 파생상품등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및 해당 거래가 투자자에게 적정하지 아니하다는 사실을 반드시 고지하여야 함

<투자자정보확인서 Scoring 기준>

재산상황	월소득 대비 투자가능 자산의 비중 ② 10% 이하 ③ 20% 이하 ④ 30% 이하 ⑤ 30% 초과
	여유자금 보유여부 ① 1개월분 미만 ② 1개월분~6개월분 ③ 6개월분~12개월분 ④ 12개월분~24개월분 ⑤ 24개월분 초과
	월소득 현황 ① 110만원 이하 ② 500만원 이하 ③ 1,000만원 이하 ④ 2,000만원 이하 ⑤ 2,000만원 초과
	향후 자신의 경제상황에 대한 예상 ⑤ 아주 좋아질 것임 ④ 좋아질 것임 ③ 지금과 비슷할 것임 ② 나빠질 것임 ① 매우 나빠질 것임
	향후 자신의 수입원에 대한 예상 ⑤ 현재 일정한 수입이 발생하고 있으며, 향후 현재 수준을 유지하거나 증가할 것으로 예상 ③ 현재 일정한 수입이 발생하고 있으나, 향후 감소하거나 불안정할 것으로 예상 ② 현재 일정한 수입이 없으며, 연금이 주 수입원임
	총 자산규모(순자산) ① 1억 이하 ② 5억 이하 ③ 10억 이하 ④ 20억 이하 ⑤ 20억 초과
	총 금융자산대비 총 투자상품의 비중 ⑤ 10%이하 ④ 20%이하 ③ 30%이하 ②40%이하 ① 40%초과
투자경험	투자경험이 있는 금융투자상품 (복수선택가능) ① 국채, 지방채, 보증채, MMF 등 ② 금융채, 신용도가 높은 회사채, 채권형펀드, 원금보장형 ELS 등 ③ 신용도 중간 등급의 회사채, 원금의 일부만 보장되는 ELS, 혼합형 펀드 등 ④ 신용도가 낮은 회사채, 주식,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ELS, 시장수익률 수준의 수익을 추구하는 주식형펀드 등 ⑤ ELW, 선물옵션, 시장수익률 이상의 수익을 추구하는 주식형펀드, 파생상품펀드, 주식 신용거래 등
	금융투자상품 투자경험기간 ① 전혀 없음 ② 1년 미만 ③ 2년 미만 ④ 3년 미만 ⑤ 3년 이상
	파생상품, 원금비보장형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상품펀드에 투자한 경험 <input type="checkbox"/> 투자기간 (년 월)
투자목적	⑤ 적극적 매매를 통한 수익을 원하며 원금을 초과하는 손실위험도 감내 가능 ④ 적극적 매매를 통한 수익 실현 목적 ③ 시장(예:주가지수) 가격 변동 추이와 비슷한 수준의 수익 실현 ② 채권이자·주식배당 정도의 수익 실현 목적 ① 기존 보유자산에 대한 위험 해지 목적 ※ 기대수익이 높을수록 손실위험도 커짐
	투자수익·위험에 대한 태도 ② 투자 수익을 고려하나 원금 보존이 더 중요 ④ 원금 보존을 고려하나 투자 수익이 더 중요 ⑤ 손실 위험이 있더라도 투자 수익이 중요
	투자수익·위험에 대한 태도 ① ±0% 범위 이하 ② ±10% 범위 이하 ③ ±20% 범위 이하 ④ ±30% 범위 이하 ⑤ ±30% 범위 초과
금융지식 수준/이해도	①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해 본 경험이 없음 ③ 널리 알려진 금융투자상품 (주식, 채권 및 펀드 등)의 구조 및 위험을 일정 부분 이해하고 있음 ④ 널리 알려진 금융투자상품 (주식, 채권 및 펀드 등)의 구조 및 위험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있음 ⑤ 파생상품을 포함한 대부분의 금융투자상품의 구조 및 위험을 이해하고 있음

감내할 수 있는 손실 수준	<input type="checkbox"/> 무슨 일이 있어도 투자 원금은 보전되어야 함 <input type="checkbox"/> 투자원금에서 최소한의 손실만을 감수할 수 있음 <input type="checkbox"/> 투자원금 중 일부의 손실을 감수할 수 있음 <input type="checkbox"/> 기대수익이 높다면 위험이 높아도 상관하지 않음
	손실감내 수준 <input type="checkbox"/> 원금기준 ±10% 범위 이하 <input type="checkbox"/> 원금기준 ±20% 범위 이하 <input type="checkbox"/> 원금기준 ±30% 범위 이하 <input type="checkbox"/> 원금기준 ±30% 범위 초과
투자하는 자금의 투자 예정기간	<input type="checkbox"/> 6개월 미만 <input type="checkbox"/> 6개월 이상 ~ 1년 미만 <input type="checkbox"/> 1년 이상 ~ 2년 미만 <input type="checkbox"/> 2년 이상 ~ 3년 미만 <input type="checkbox"/> 3년 이상
가족관계	<input type="checkbox"/> 부양가족 있음 <input type="checkbox"/> 부양가족 없음
과세형태	<input type="checkbox"/> 종합과세대상 <input type="checkbox"/> 일반과세대상
연령	<input type="checkbox"/> 19세 이하 <input type="checkbox"/> 20세~40세 <input type="checkbox"/> 41세~50세 <input type="checkbox"/> 51세~60세 <input type="checkbox"/> 61세 이상
취약투자자 여부	취약투자자 해당 여부 <input type="checkbox"/> Yes <input type="checkbox"/> No - 70세 이상 투자자 - 미성년자 - 정상적 판단에 장애가 있는 투자자 - 금융투자상품 무경험자 - 문맹자 등

점수계산방법

- 각 항목의 응답결과에 따른 점수를 합산하여 계산함.

투자성향분류

- 점수 결과에 따라 고객의 투자성향을 5단계로 분류

20점 이하 : 안정형

20점초과형 ~ 40점이하 : 안전추구형

40점초과 ~ 60점이하 : 위험중립형

60점초과 ~ 80점이하 : 적극투자형

80점초과 : 공격투자형

[별지 제 3호]

<금융투자상품별 투자위험도 분류기준>

구분		초고위험	고위험	중위험	저위험	초저위험
채권		투기등급 포함(BB이하)		회사채 (BBB+~BBB-)	금융채 회사채 (A-이상)	국고채 통안채 지방채 보증채 특수채
파생결 합증권	(ELS, DLS)	원금비보장형		원금부분보 장형	원금보장형	
	ELW	ELW				
주식		신용거래,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 관리종목	주식			
장내파생상품		선물옵션,FX				

[별지 제4호]

<고객의 투자성향별 투자권유 가능상품 분류기준>

구분	초고위험	고위험	중위험	저위험	초저위험
안정형	투자권유불가	투자권유불가	투자권유불가	투자권유불가	
안전추구형	투자권유불가	투자권유불가	투자권유불가		
위험중립형	투자권유불가	투자권유불가			
적극투자형	투자권유불가				
공격투자형					

[별지 제5호]

고령 투자자에 대한 금융상품 판매시 보호기준

1. 고령 투자자의 정의

가. 고령 투자자라 함은 70세이상 투자자를 원칙으로 하고 그 중 80세이상의 투자자는 보다 강화된 판매절차를 적용하는 초고령 투자자로 분류한다.

나. “가”에서 규정한 연령에 도달하지 않더라도 사리 분별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투자자에 대하여는 고령 투자자에게 적용하는 판매절차를 적용하여야 한다.

2. 고령 투자자 보호의 일반적인 기준

가. 고령투자자는 전담창구제를 실시하여 한다.

① 고령 투자자가 신규로 내점하는 경우는 수탁팀장이 전담하여 상담하여야 한다. 단, 고령 투자자에 해당되는 고객의 계좌개설이 방문 계좌, 또는 은행 연계계좌로 개설한 경우에는 수탁팀장은 반드시 유선으로, 내점시 상담절차에 준하여 상담절차를 진행하고 그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고령투자자가 전담창구의 이용을 거부하거나, 특정직원을 지정하여 상담을 원하는 경우는 다른 창구를 이용하게 하여도 무방하다.

③ 회사는 고령 투자자의 사리분별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좌개설 및 수탁을 거부하여야 한다.

④ 사리 분별 능력은 다음의 예시를 참조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수탁팀장등은 사리분별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의심되면 관련 본부장과 협의하여 소비자 보호총괄 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사리분별능력은 아래 예시 등을 참조하여 종합적으로 판단

- 간단한 개념을 이해하거나 처리하는데 어려워하는 경우
- 기억을 잃어버린 듯한 외관을 보이는 경우
- 의사를 표시하거나 대화하는데 어려운 모습을 보이는 경우
- 투자결정에 따른 결과를 이해하기 어려워 보이는 경우
- 행동이 불안정한 경우
- 기존의 투자목적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투자자문을 거절하는 경우
- 자금이동이 전혀 없는 계좌에서 자금이 없어졌다고 주장하는 경우
- 최근의 금융거래내역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
- 사회적 관계, 주변상황에 대해 혼란스러워 하는 경우
- 평소답지 않게 용모가 단정하지 않거나 건망증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

나. 고령투자자 보호정책 마련, 판매프로세스 개선 및 임직원에 대한 교육등은 Compliance 팀에서 담당한다

3. 투자권유 유의상품 지정 및 투자권유절차

가. 회사는 구조가 복잡하고 가격변동성이 크거나 환금성에 제약이 있는 금융투자상품을 “투자권유 유의상품”으로 지정하여야한다.

나. 회사에서 정한 “투자권유 유의상품”의 세부 내역은 별지 제 6 호에 따른다

다. “투자권유 유의상품” 투자권유시는 사전에 다음의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한다.

- ① 영업직원등이 고령투자자에게 “투자권유 유의상품”을 권유하는 경우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관리직 직원(영업담당 본부장 또는 본부장이 지정하는 담당자, 영업직접 담당자는 제외하여야함.) 권유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②에서 정한 항목을 사전에 확인하여야한다
- ② ①에서 정한 투자권유의 적정성을 판단하기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확인하여야한다

- 최근 투자자 정보 변경여부(ex. 근황 문의)
- 투자자금의 성격(ex. 생계자금 해당여부)
- 투자권유 과정의 적법성(ex. 부적합상품 판매를 위한 정보변경 여부)
- 주요 설명내용의 이해여부(손실가능성, 상품의 기본적 구조 이해 여부)
- 사리분별능력의 현저한 변화 유무(ex. 말투, 기억수준 등 고려)

- ③ 관리직 직원은 고객과의 직접적 면담(투자권유시 배석 등) 또는 전화를 통해 고객의 이해 여부 및 투자권유의 적정성 등을 사전 확인하고 확인내용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 ④ 관리직 직원이 사전 확인한 결과, 고객의 사리분별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상품을 이해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 체결을 중단하여야 하고, 상품이 고객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사실과 회사가 투자권유할 수 없는 상품이라는 점을 고객에게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4. 고령투자자 보호 관련 내부통제 기준

가. 고령투자자 판매절차 및 교육

① 고령투자자 응대절차

- 고령 투자자는 상담시는 2.-가- ①에서 정하는 전담창구절차에 따른다
- 수탁팀장등 1차로 면담한 임직원이 2- ④의 절차에 의하여 사리분별 능력이 떨어진다고 의심되면 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하며, 보고를 받은 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는 면담의 기록등을 참조, 관련 본부장과 협의하여 최종 계좌 개설 및 수탁 거부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 ② 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는 고령투자자 전담창구 또는 영업직원등을 대상으로 고령투자자에 대한 보호절차 등에 대하여 년 2회 이상 교육을 실시 하여야한다.

나. 신상품 개발·판매시 고령투자자 판매 권유 제한

- ① 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는 신상품개발, 판매시 “투자권유 유의상품”에 해당되는 상품인지 여부를 검토하고 고령 투자자에게 판매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고령투자자에게 판매 권유를 금지하여야한다.
- ② 고령투자자를 주요 대상으로 각종 설명회·세미나 등을 개최하는 경우에는 고령투자자를 현혹할 수 있는 허위·과장정보, 투자광고물이 사용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다 .준법경영본부는 고령투자자에 대한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높은 거래를 추출하여 정기 감사 시 반드시 검사하여야한다

▶ 다음과 같은 거래를 중점적으로 감사하여야한다

- 고령투자자가 부적합확인서를 작성하고 “투자권유 유의상품”에 가입한 경우
- 과도한 신용거래가 발생되거나, 투자금액 대비 수수료 비중이 높은 계좌
- 최근 주문대리인 등이 지정·변경된 계좌 중 투자활동 패턴에 변경(예: 투자자성향 상향 등)이 있는 계좌
- 구조가 복잡한 고위험상품을 일정 금액 이상 거래하는 계좌

라. 가족 등 조력자의 연락처 확인

고령투자자의 경우 수탁팀장은 사전에 조력자를 지정 하도록하여 연락처를 확보하도록 노력 하여야한다.

- ▶ 개인정보보호 등을 위해 고령투자자나 조력자의 동의를 있는 경우에 한함
- ▶ 실무적으로는 창구에서 고객이 녹취전화로 조력자에게 직접 전화하도록 하여 동의내용을 녹취해두는 것이 바람직함.

5. 초고령자에 대한 추가 보호방안

가. 회사는 초고령자에게 구조가 복잡하고 가격변동성이 크거나 환금성에 제약이 있는 “투자권유 유의상품”에 해당하는 상품을 투자권유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임직원의 투자권유가 없는데도 고객이 매수를 원하는 경우에도 고객에게 적합하지 않은 상품임을 설명하고 판매를 최대한 자제하여야 한다.

나. 회사는 초고령투자자에게 “투자유의상품의 위험성 및 고객에게는 적합하지 않은 상품임을 충분히 설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매매를 원하는 경우 조력자와의 상담 또는 투자숙려기간 부여한 후 판매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① 영업관리직원(또는 수탁팀장)은 초고령투자자에게 “투자권유 유의상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가족 등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한다

② 회사는 초고령투자자가 가족 등의 조력을 받을 수 없거나 가족 등에게 투자사실을 밝히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족 등을 대신하여 관리직 직원이 동석하여 초고령투자자를 조력할 수 있고, 초고령투자자의 상품에 대한 이해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③ 회사는 초고령투자자가 가족 등의 조력이나 관리직 직원의 동석을 통한 조력을 받을수 없는 경우, 초고령투자자에게 영업점 이외의 장소에서 투자권유가 이루어지는 경우 또는 비대면 방식의 투자권유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초고령투자자에게 충분한 투자숙려기간(1일 이상)을 부여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 수탁팀장은 초고령투자자가 “투자권유 유의상품”에 투자한 경우 해피콜 등을 통해 사후모니터링을 실시하여야한다. 다만 고객의 명시적 거부사유가 있거나 관리직 직원이 판매행위의 적정성 등에 대해 사전 확인을 한 경우 등은 해피콜을 생략할 수 있다.

6. 수탁팀장등 고령투자자와 상담등 영업행위를 하는 임직원은 향후 고객의 의사를 분명히 확인하기 위하여 고령투자자와의 상담내용 등을 녹음·녹화하거나 판매직원 또는 관리직 직원이 기록·유지하여야한다.

[별지 제6호]

고령투자자에게 투자권유시 유의해야하는 투자권유 유의상품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깊은 외 가격 선물지수옵션

로보어드바이저 투자자 유의사항

1. 로보어드바이저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한 알고리즘 및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투자자의 성향에 맞는 투자자문·운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자산관리서비스입니다.
2. 로보어드바이저는 **평균적인 가정을** 기반으로 제시되는 투자조언으로서 금융시장의 **모든 변수를 반영하지 못하며, 시장상황 등에 따라 손실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로보어드바이저를 통해 실현된 **기존의 수익률이 미래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3. 로보어드바이저는 **투자자 성향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자문이 이루어지므로 효율적인 투자자문을 위해서는 **투자자의 정확한 답변이 중요하며, 과장되거나 사실과 다른 답변은 잘못된 운용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투자자는 **알고리즘의 특징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고 투자에 임해야** 합니다
4. **테스트베드***는 로보어드바이저 알고리즘의 합리성, 법규 준수성, 시스템의 안정성 등을 확인하는 절차로서, **알고리즘의 수익성 및 품질을 검증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 * 분산투자, 투자자성향 분석, 해킹방지체계 등 투자자문·일임을 수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율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
 - 이에 따라, **테스트베드를 통과한 로보어드바이저가 테스트베드를 통과하지 않은 로보어드바이저에 비해 안정성 측면에서 장점이 있을 수 있으나, 반드시 더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5. 로보어드바이저의 자문·일임과정에 사람의 개입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시장상황의 급변 등 필요시에는 투자운용인력의 판단이 개입될 수 있습니다. (※ 회사의 전문인력 개입관련 정책에 따라 “5.”는 표기 생략 가능)